



제410회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의 경력기간에 반영 등〉  
■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082호)

2023.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발의 배경 및 총괄적 검토 .....                    | 3 |
| 2. 법률안의 구성체계 .....                         | 5 |
| 3. 주요조문별 검토 .....                          | 6 |
| 가. 정의(안 제2조) .....                         | 6 |
| 나.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특례 등(안 제5조 및 제6조) .... | 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은희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3. 10. 10.
3. 회부연월일 : 2023. 10.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別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서,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  
別法」에 의해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  
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  
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  
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에 반영함(안 제5조 및 제6조).

### Ⅲ. 검토의견

#### 1. 발의 배경 및 총괄적 검토

과거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別法(이하 “시국사건교원임용특별법”이라 함)」 제정(법률 제6014호 1999. 9. 2.)에 따라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sup>1)</sup>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 등의 사유로 임용된 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 동안 호봉·연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동법이 폐지(법률 제11768호, 2013. 5.22.)되었음.

2023년 11월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 결정<sup>2)</sup>(2023. 6. 7.)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된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은 186명<sup>3)</sup>으로,

대부분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사범대를 입학하여 1980년대

---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pp83., 2023. 9.  
시국사건교원임용특별법에 따른 임용제외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시국사건을 ①반정부 집회 및 시위, 유인물 배포, 단체 결성 및 가입, ②노동운동 관련 사건, ③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집회 및 시위로 대별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임용제외 사유 예시로 들고 있음.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pp93., 2023. 9.  
“정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임용 대상자들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차별),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신청인 대부분이 시국사건교원임용특별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되어 호봉, 승진, 연급 등에서 불이익이 있었다. (…중 략…) 문교부, 시도교육위원회가 위법·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결과 신청인들에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 국회도 신청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을 발의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교원임용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조치가 필요하다.”

3) 당초 185명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시국사건 교원 임용제외 대상자 결정 결정에 따라 1명 추가되었음.

후반 또는 1991년 교원임용고시 제도 시행 이후 졸업하였고, 시국사건 교원임용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으로 임용되었음.

### < 임용제외교원의 졸업 및 임용 현황 >

2023. 9. 현재

| 입학연도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계   |
|-------|-------|------|------|------|------|------|-------|------|-----|
| 인원(명) | 15    | 12   | 19   | 40   | 45   | 29   | 23    | 2    | 185 |
| 졸업연도  | 1985  | 1986 | 1987 | 1988 | 1990 | 1991 | 1991~ |      | 계   |
| 인원(명) | 7     | 4    | 7    | 35   | 42   | 33   | 57    |      | 185 |
| 임용연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기타   |       |      | 계   |
| 인원(명) | 67    | 7    | 64   | 33   | 2    | 12   |       |      | 185 |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러나 특별채용된 임용제외교원은 “신규채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호봉, 경력 등이 산정되지 않는 채용 형태로 해직되기 전 같은 해에 임용되었던 다른 교원들에 비해 호봉, 보수, 승진, 경력, 연금 등의 수준이 낮은바, 원상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직”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정안은 임용제외교원들의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연금 등에서 받은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sup>4)</sup>

4)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법률 제6014호, 1999.9.2. 제정)」 제2조 (임용제외자의 범위) 이 법에서 “임용제외자”라 함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 까지의 기간중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집회 및 시위·교원로조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 2.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본칙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을 나누고 있지는 않음.

### < 제정안 조문 체계 >

|                |                                     |
|----------------|-------------------------------------|
| 제1조 목적         | 제5조 임용제외기간의 근무경력 인정에<br>관한 특례       |
| 제2조 정의         |                                     |
| 제3조 국가의 책무     | 제6조 경비 등의 지원재직기간의 합산<br>및 산업에 관한 특례 |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3. 주요조문별 검토

#### 가.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는 ‘임용제외교원’ 및 ‘임용제외기간’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 特別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3. “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나.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안 제2조는 “임용제외교원”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미 폐지(법률 제11768호, 2013. 5. 22)된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別法」<sup>5)</sup>에 따른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 포함)으로 한정하면서,

①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제외자로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6)에서 명시하고 있는 “1989년 7월 25일”이 당시 문

5)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입법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사. 「전사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6)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특별법」 [법률 제6435호, 시행 2001.3.28.] [법률 제11768호, 2013.5.22., 폐지]

제2조(임용제외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임용제외자”라 함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중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2. 제1호의 기간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3.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② 제1항 각호에서 “시국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 관련사건

2. 교원노동조합 기타 노동운동 관련사건

교부가 시도교육청에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위법한 지시를 한 날이고, “1990년 10월 7일”은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사립학교 졸업자 등에 대한 차별로 위헌 결정한 날의 전일 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②이외에도 “졸업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및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제외된 사람도 임용제외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별로 기산일이 다양할 수 있을 것임.

“임용제외기간” 즉 피해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1989년 9월 1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국·공립 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일 전 마지막 학기 시작일로 통일함으로써, 과목별로 시국사건과 무관하게 임용되지 못한 임용대상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서정리위원회,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pp50., 2023. 9.

“동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9년 7월 25일”은 당시 문교부가 국립사대 졸업자들에 대한 신규교사 임용절차 강화를 지시한 날이며, “1990년 10월 7일”은 국립사범계대학 졸업자 우선임용조항(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전날에 해당됨.”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 [89헌마89 1990.10.8. 결정]

제11조 (신규채용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나.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특례 등(안 제5조 및 제6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임용제외교원의 지위를 원상회복에 상응하도록 임용제외기간을 승진 및 호봉 획정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승진 및 호봉 획정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임용제외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며, 재직기간 합산으로 발생하는 미납기여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7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제1항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측면에서 임용제외기간 전부를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장 공모, 수석교사 등 특정 직위의 자격으로 일정 경력<sup>7)</sup>을 필수

적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경력은 실무경험을 직위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승진을 위한 교육경력과 호봉 획정 및 연금 산정을 위한 경력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안 제6조의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 합산과 관련해서는 연금은 기본적으로 보수 및 보수에서의 본인 부담금에 기반한 것이므로 재직기간 합산 부분에 대한 본인 기여금의 부담을 조건으로 연금의 적용에 있어서도 임용제외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7)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 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재구성

| 구분                               | 자 격 요 건                                                                                                                                                                                              |
|----------------------------------|------------------------------------------------------------------------------------------------------------------------------------------------------------------------------------------------------|
| 초·중등학교<br>고등기술학교<br>특수학교<br>(교장) | 1.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br>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초·중등학교<br>고등기술학교<br>특수학교<br>(교감) | 1. 초·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br>2.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br>4.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이미 퇴직한 교원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합산된 재직기간만큼 본인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할 때, 연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으면 기여금 납부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제70조<sup>8)</sup>에 따른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임용제외기간 동안 인정받지 못한 호봉·연금·경력 인정 이외에도 미지급 받은 보수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제2105440호, 2020.11.17.)」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바,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제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193 |

8) 「공무원연금법」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